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1.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 : 전국 67개 상공회의소
-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 : 전국 67개 상공회의소, 47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발급근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91조(권한의 위임 위탁)
- *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나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
- FTA 원산지 증명서류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3. FTA원산지증명서

-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요구
- FTA 원산지규정이 비특혜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
 - 이유 : FTA특혜관세 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무임승차 방지 및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

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가. 대상국 및 발급방식

- 한·아세안 상품협정 적용대상 국가
 - 발효국가 : 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태국
 - 발효일 : 2007년 6월 1일
 - 발급방식 :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중 FTA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개성공단제품 제외)와 세관에서 발행
- ※ 태국은 '10.1.1일부터 발효(한국의 쌀 수입시장 미개방 관련 태국측 불만으로 지연)

나. 발급절차

○ 대상국 및 품목확인

- 한·아세안 FTA 협정 대상국(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확인 후, 수입국 기준 HS코드 10단위를 입력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정관세율을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는 품목인지 확인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국가에서 100% 생산된 제품과 이를 재료로 만든 제품

- 예) 농축산물, 광산물 등

○ 실질변경기준

- HS 변경기준 : HS 2단위, 4단위, 6단위 등 변경국가 (협정별 상이)
- 부가가치기준 : FOB, EXW가격기준 일정비율 이상 부가가치 창출 역내누적 부가가치 적용시 최종생산국이 원산지
- 가공공정기준 : 특정한 가공공정 수행시 원산지 인정
- ※ 복합기준 : 상기 기준을 2개 혹은 그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 예) 부가가치 40% + HS 4단위 변경, 부가가치 50% + 봉제, HS변경 + 봉제 등

* 세번별로 원산지 기준이 각기 상이

- 예) 김치 : 역내가치포함 비율(RVC)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 이상인 것에 한함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 RVC가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 발급기간 :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 현지확인이 요청되는 기준

-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자.
- 전년도에 법, '관세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단순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번호 입력으로 대체)
-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Ak-C/O 입력 신청서식에 포함)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 입증서류
 - 세번변경기준(CTH, CTC 등) * CTH : Change in Tariff Heading method
*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 세번변경 입증서류(예 : 원재료 구입 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메뉴얼, 홍보책자, 수입신고필증 등)
 - 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
 -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 수입신고필증 등)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부자재 공급한 업체가 작성
 -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B/L사본과 사유서 : B/L(선적후 신청시), 사유서(선적 30일 경과후 신청시)
- L/C사본 등 계약서류(원산지증명서 원본 2부이상 발급시)

6. 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 애로사항 등 (대한상공회의소)

- 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
 - 발급처 : 상공회의소 전국 지부 및 세관 등에서 발급 중
 - 발급현황 : '09년 기준 공산품 포함 전체 약 1만 6천건 수준
 - * 세관의 발급실적은 대한상의의 10% 수준인 1천 6백건 정도 추정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시 늦어도 3일 이내 발급 완료
- 발급 애로사항 관련
 - 농식품 수출기업 등에서 발급절차가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증명'에 대한 업계의 지식 부족이나, 서류 미비에 따른 것
 - * 국내산이 대부분인 신선농산물의 경우 발급에 애로가 없으나, 수입원료 사용시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 기준 등 증명 구비 애로

○ 애로사항 해소방안

- '원산지인증수출자' 등록시 1회 서류제출로 다수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 상공회의소 운영 원산지 증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
 - * 현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 * 업계의 요청이 있을시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으로 교육 실시 가능
(담당자 : 인증서비스팀 한은숙 과장 / 02-6050-3336)
- 매월 격주로 수요일마다 교육 실시중으로 상공회의소 소회의실 또는 인원이 많을 경우 방문 교육 가능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 고객지원 → FTA 원산지 상담 코너를 통해서도 원산지증명 상담 가능

☞ <http://cert.korcham.net/certweb/board/index.htm?boardType=10>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Trade Certification Service Center

Home > 웹 증명서 발급 > 고객지원

FTA 원산지증명상담

1 / 3 pages 전체: 36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조회수
4373	생산공정내역 설명서	노동훈	2010-03-30	31
4369	원산지 소명서 중 원재료 명세서 (답변완료)	노동훈	2010-03-30	52
4340	CEPA (답변완료)	이재원	2010-02-18	97
4338	한-싱가폴 : 발급서류 관련 (답변완료)	김민영	2010-02-18	74
4328	원산지 소명서(답변완료)	김진영	2010-02-12	139
4324	한-다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답변완료)	김진영	2010-02-11	101
4321	CTH/RVC (답변완료)	노동훈	2010-02-10	153
3395	식사가가 (답변완료)	박하판토스	2010-02-24	170
3394	한-다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답변완료)	박소연	2010-02-24	262
3389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 (답변완료)	오연주	2010-02-23	196
3380	FORM A(관한) 질문(답변완료)	최유승	2010-02-22	198
3349	한-다세안 (답변완료)	강해정	2010-01-25	228
333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답변완료)	정미경	2010-01-14	228
3325	한-다세안(미국) FTA 증명 발급 절차 (답변완료)	전은영	2010-01-12	310
3393	한미세안FTA: 미국 수출시 HS Code 상이문제 (답변완료)	피지선	2009-12-29	293

1 2 3

제목 검색

대한상공회의소 100-71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01호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전화: 02-6050-3333 Copyright©KCCI. All right reserved.

붙임 : 한·아세안 FTA 원산지 관련 양식

원산지확인서

1. 생 산 자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 수 출 자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 산 지 확 인 대 상 물 품						
3. 연번	4. 품명 규격	5. HS 번호 (6단위)	6.원산지결정 기준	7. 적용대상협정	8. 원산지 준 충족 여부	9. 원산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작성·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서명) 직 위 : 회사명 및 주소 : 작 성 일 자 :						

□ 공통 요령

- 원산지확인서는 국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1. 생산자		·생산자의 상호, 주소 등 기재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등
2. 수출자		·수출자의 상호, 주소 등 기재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등
3 연번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4 품명·규격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계약번호 기재
	·계약번호를 모를 경우	·세금계산서 번호, 주문서 번호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번호		·HS 6단위 기재
6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물품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 항목8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요령과 같이 기재
7. 적용대상협정		·적용대상 협정을 기재
8. 원산지 기준충족 여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 기재 (6번 항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예☑ ”에 표시)
9 원산지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원 산 지 소 명 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4.HS No.			
5.상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금 액					
7.주요생산공정						
원 재 료 명 세 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		/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2.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기 타		예 ☐ 아니오 ☐
24.원산지 결정		충 족 () 불 충 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수출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산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 표기합니다. ○ 금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기재된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료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산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기재합니다.
12	가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재료)와 비원산지재료(수입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23	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 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표기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1.공급자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2.공급처 (수출자 /생산자)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 팩 스			
	주소(전자주소)							
공 급 물 품 명 세 서								
3.연번	4.품명·규격	5.적용대상 협정	6.품목번호 (HS 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국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제공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번호	기재 항목	기 재 내 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 급 자	○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공 급 처	○ 원산지확인서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품명 · 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5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table><tr><th>원산지기준</th><th>기재방법</th></tr><tr><td>가. 완전생산 물품</td><td>- WO</td></tr><tr><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td>- CC - CTH - CTSH</td></tr><tr><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td>- BD - BU - MC - NC</td></tr><tr><td>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td>- CTSH - BD</td></tr><tr><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td>-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td></tr><tr><td>바. 주요공정기준</td><td>- SP</td></tr><tr><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td>- OP</td></tr></table>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국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p (예시) 2008.07.01(작성일) - 2009.06.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